

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 2항의 “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”을 근거로 「구미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」를 제정(1995.1.1) 시행하고 있으나,
- 나. 상위법인 「도로법」 제117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「구미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」에 신설하고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「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생략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생략

□ 도로법

제117조(과태료) ① 생략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1.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
2.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

3~7 생략

③~⑥ 생략

□ 도로법시행령

제10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. 다만,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·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5조제1항 관련)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세부부과기준
가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	법 제117조 제2항제1호	1)초과 점용면적이 1㎡ 이하인 경우: 5만원 2)초과 점용면적이 1㎡를 넘는 경우: 1)의 금액에 1㎡ 를 넘는 1㎡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,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.
나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	법 제117조 제2항제2호	1)점용면적이 1㎡ 이하인 경우: 10만원 2)점용면적이 1㎡를 넘는 경우: 1)의 금액에 1㎡를 넘는 1㎡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, 부과 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.

소관 실·과		도로과
입 안 자	과 장	박희철
	담 당	구춘서
	담 당 자	한상우 (480-5453)